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2 - 102호

『인천광역시 유통업상생협력과 소상공인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5월 31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유통업상생협력과 소상공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11175호, 2012. 1. 17공포)됨에 따라 이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유통업상생협력과 균형발전 조례」로 바꾸고 관련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유통업상생협력과 소상공인지원 조례」를 「인천광역시 유통업상생협력과 균형발전 조례」로 제명변경 및 제5조 삭제 등 관련내용을 바꾸어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0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33, 팩스 032-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성 명: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유통업상생협력과 소상공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유통업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유통업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유통업상생협력과 소상공인지원조례”를 “인천광역시 유통업상생협력과 균형발전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여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을 “지역”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대형유통기업과 농협중앙회가 출자한 농협유통에서 운영하는 매장 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형 슈퍼마켓을 말한다.

제2조제6호 중 ““상생협력”이란”을 ““상생협력과 균형발전”이란”으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를 “공생발전과 상호이익 증진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상생협력을”을 “상생협력과 균형발전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상생협력과 균형발전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과 균형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상생협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유통업 균형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지역 내 생산·유통되는 상품 및 농수축산물의 구매 및 판로개척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지역 유통업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해 권역별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적정 총량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제6조 제2호에 따라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입점계
획이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상권영향조사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상권영향조사에 따라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입점
이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에 영향을 미칠 경우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해
입점지역, 시기, 규모 등에 대해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상생협력과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수립계획을 토론
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 협의회는 위원장은 정무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

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유통업과 소상공인 지원업무담당 부서의 장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 대형유통기업 대표 및 준대규모점포 운영자
4. 중소유통기업 대표
5. 소상공인 대표 및 소상공인 협동조합 대표
6. 전통시장 대표
7. 소비자 및 시민단체 대표

8. 그 밖에 유통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⑧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⑨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를 업무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⑩ 협의회 회의는 분기별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⑪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 지원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⑬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⑭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2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생산한 상품의 납품”을 “생산 및 유통상품의 구매”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추진 권고”를 “추진”를 하여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중소기업 활성화 기금 설치

제7조의 제목 “(상생협력사업의 지원)”을 “(상생협력과 균형발전사업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상생협력”을 “상생협력과 균형발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인천광역시 유통업상생협력과 소상공인지원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입점한 대형유통기업과 준대규모점포,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관계를 촉진시키고 <u>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여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함으로써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u>준대규모점포</u>”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 5. (생략) 6. “<u>상생협력</u>”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준대규모점포,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에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u>인천광역시 유통업상생협력과 균형발전조례</u> 제1조(목적) ----- ----- ----- ----- <u>지역</u> ----- ----- ---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u>준대규모점포</u>”란 대형유통기업과 <u>농협중앙회가 출자한 농협유통에서 운영하는 매장 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형 슈퍼마켓을 말한다.</u> 4. · 5. (현행과 같음) 6. “<u>상생협력과 균형발전</u>”이란 ----- ----- -----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상생협력계획의 수립·시행)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준대규모점포,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유통업상생협력계획(이하 “상생협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상생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생략)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5. 상생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7. (생략)

제4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

----- 공생발
전과 상호이익 증진을 -----

제3조(상생협력계획의 수립·시행) ① -----

----- 상생협력
과 균형발전을 -----

② -----

1.·2. (현행과 같음)

3. 상생협력과 균형발전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삭 제>

6.·7. (현행과 같음)

제4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

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 협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상생협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유통업 균형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6. 지역 내 생산되는 상품 및 농수축산물의 구매 및 판로개척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 ② 협의회는 제6조 제2호에 따라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입점계획이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상권영향조사를 시장에

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 협력과 균형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상생협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삭 제
 3. 제6조에 따른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유통업 균형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6. 지역 내 생산·유통되는 상품 및 농수축산물의 구매 및 판로개척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 ② 협의회는 지역 유통업 실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권역별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적정 총량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 ③ 협의회는 제6조 제2호에 따

게 요청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상권영향조사에 따라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입점이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에 영향을 미칠 경우 입점지역 조정을 권고 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협의회는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유통업과 소상공인 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 대형유통기업 대표 및 준대규모점포 운영자

4. 중소유통기업 대표

5. 소상공인 대표 및 소상공인 협동조합 대표

6. 전통시장 대표

7. 소비자 및 시민단체 대표

8. 그 밖에 유통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라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입점계획이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상권영향조사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상권영향조사에 따라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입점이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에 영향을 미칠 경우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해 입점지역, 시기, 규모 등에 대해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상생협력과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수립계획을 토론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 협의회는 위원장은 정무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유통업과 소상공인 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를 업무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협의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⑨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 지원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⑪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대형유통기업 대표 및 준대규모점포 운영자

4. 중소기업 대표

5. 소상공인 대표 및 소상공인협동조합 대표

6. 전통시장 대표

7. 소비자 및 시민단체 대표

8. 그 밖에 유통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⑧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⑨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를 업무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⑩ 협의회 회의는 분기별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⑪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규모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선진 유통기법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통시장 등 상품권발행 지원에 관한 사항

결한다.

⑫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 지원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⑬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⑭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 점포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시장은 지역 유통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상호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생략)

2. 지역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의 입점지역, 시기, 규모 등에 관한 사항. 다만, 입점일 3개월 전에 예고할 것을 권고

3. 지역 업체가 생산한 상품의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

4. ~ 7. (생략)

<신설>

8. 대규모점포 지역법인화 추진 권고

제7조(상생협력사업의 지원) 시장은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려는 자에게 협의회의

제6조(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 점포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1. (현행과 같음)

2. -----

----- <단서 삭제>

3. ----- 생산 및 유통 상품의 구매 -----

4. ~ 7. (현행과 같음)

8. 중소상인 활성화 기금 설치

9. ----- 추진

제7조(상생협력과 균형발전사업의 지원) ----- 상생협력과 균형발전-----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
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 제2조(정의) ○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 제3조(대규모점포의 종류 등) ○ 제5조의2(대형 및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조례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0, 2005.12.23, 2008.2.29, 2008.3.21, 2010.11.24>

1. "유통산업"이라 함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라 함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규모점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의2.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5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4. "임시시장"이라 함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5. "체인사업"이라 함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아래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하 이 호에서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판매방법·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다.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 및 체인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업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품목·영업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라. 조합형 체인사업

같은 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시설활용 등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6. "상점가"라 함은 일정 범위안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7. "전문상가단지"라 함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
8. "무점포판매"라 함은 상시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유통표준코드"라 함은 상품·상품포장·포장용기 또는 운반용기의 표면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된 숫자와 바코드 등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유통표준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 유통부문에 관하여 표준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상품을 판매할 때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서 광학적 자동판독방식에 의하여 상품의 판매·매입 또는 배송 등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것을 말한다.
12. "물류설비"라 함은 화물의 수송·포장·하역·운반과 이를 관리하는 물류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물품·기계·장치 등의 설비를 말한다.
13. "도매배송서비스"라 함은 집배송시설을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매입한 상품을 도매하거나 위탁받은 상품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수수료를 받고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14. "집배송시설"이라 함은 상품의 주문처리·재고관리·수송·보관·하역·포장·가공 등 집하 및 배송에 관한 활동과 이를 유기적으로 조정 또는 지원하는 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의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15. "공동집배송센터"라 함은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을 말한다.

-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 제3조(대규모점포의 종류 등)** ①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②법 제2조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라 함은 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③ 법 제2조제3호다목의 매장면적 산정 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 내의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복도의 면적을 포함한다.

- 제5조의2(대형 및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①법 제3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형유통기업(별표 1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 및 백화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중소유통기업 또는 납품업자간의 상호발전에 관한 유통산업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호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유통업상생협력과 균형발전 조례」로 제명 및 관련 내용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재정수반이 요인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 건설교통위원회 정 수 영 의원